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4차 회의록

▣ 회의일시: 2023. 12. 7.(목), 14:00

▣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배영동, 이순녀, 전경욱, 천혜숙
혜일(이승우), 황경숙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 시·도지사 추천 접수(전년도)	=	○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
↓		
○ 관계전문가 검토(전년도)	=	○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
↓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매년 1월 31일까지)
↓		
○ 조사단 구성	=	○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
↓		
○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	=	○ 전승가치(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대표성 등) 및 전승환경(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 조사
↓		
○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	○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 종목만 지정 시 : 지정 예고 여부 검토 -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시 : 인정 절차 진행 ※ 보유자(단체)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
↓		
○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
↓		
○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		
○ 종목 지정 관보 고시	=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업무 절차

업무처리 절차	구체적인 실행 내용
ㅇ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매년 1월 31일까지)
ㅇ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	ㅇ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 신청서 접수
ㅇ 조사단 구성	ㅇ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ㅇ 관련 학회 등 추천,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ㅇ 보유자 인정조사(1단계) 실시	ㅇ 서면조사(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ㅇ 1단계 조사 결과 검토,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ㅇ 보유자 인정조사(2단계) 실시	ㅇ 현장조사(실연) 및 면담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ㅇ 2단계 조사 결과 검토,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
ㅇ 보유자 인정조사(3단계) 실시	ㅇ 심층 기량조사(실연)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ㅇ 3단계 조사 결과 검토,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
ㅇ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30일) 및 의견 수렴 ※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
ㅇ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
ㅇ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 인정서 교부, 전승지원금 지급

목 차

【심의사항】		
1	‘설과 대보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부분공개
2	‘한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부분공개
3	‘단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부분공개
4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부분공개
5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부분공개
6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심의	비공개
【검토사항】		
1	‘생전예수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비공개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지식 2023-04-001

1. ‘설과 대보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설과 대보름’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설과 대보름’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3.3월~7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 ‘명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3.3.3.~7.30.)

○ 2023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 검토(‘23.9.7.)

○ ‘설과 대보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및 의견 수렴(‘23.9.18.~10.17.)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3월.~7월

○ 조사기관: ㈔한국민속학회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설과 대보름’을 지정함.

- 설과 대보름은 우리 대표 명절로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해당하며,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세시내용이 시간적·내용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설은 가족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시문화가 강조되는 반면, 대보름은 마을단위의 공동체 의례 및 놀이가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 명절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설과 대보름은 우리나라 명절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문화는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설과 대보름은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전통적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세시명절로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신년맞이 명절의 인류보편적 가치는 물론 우리 민족의 전통 시간 개념의 고유성이 돋보이며 관련 음식·놀이·연희·속신 등은 개인 및 마을 등 공동체적 특수성을 보여주며, 지역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어 온 설과 대보름의 여러 문화적 측면은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냄.

○ 특히, 설의 대표의례인 '차례'와 '성묘'는 혈연 간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자 제의를 통해 조상의 은덕과 은혜에 보답하는 계기가 됨. 산업사회가 가족의 분산을 초래하였으나, '귀성(歸省)'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지 등 가족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등 설과 대보름은 분산된 혈연이 집합하는 계기가 되고, 혈연간 협동과 화목을 다지는 핵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설과 대보름은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예로부터 설과 대보름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이듬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명절로 '효(孝)'에 기반한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설과 대보름'은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시 '설'로 검토

하였으나, 설과 정월대보름의 전통적 시간성 인식을 고려하여 ‘설과 대보름’ 을 종목 명칭으로 제안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과 대보름’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마. 심의할 내용: ‘설과 대보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바. 의결사항

○ 가결(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있음
- 종목 명칭은 ‘설과 대보름’으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안건번호 지식 2023-04-002

2. ‘한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한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한식’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3.3월~7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 ‘명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3.3.3.~7.30.)
○ 2023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 검토(‘23.9.7.)
○ ‘한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및 의견 수렴(‘23.9.18.~10.17.)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3월~7월
○ 조사기관: ㈔한국민속학회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한식’을 지정함.
- 한식(寒食)은 봄을 대표하는 우리 명절로,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이며 성묘, 벌초, 한식 제사 등 조상 추모의 의례가 강조되어 전승되고 있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한식은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한식은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봄철 대표 명절로 조상숭배 및 제사문화의 유교적 가치가 여전히 전승되고 있는 측면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냄.

○ 현재에도 한식은 제사문화의 약화, 장례법의 변화 등 조상을 추모하는 양상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상추모의례로서의 한식제사, 성묘문화는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예로부터 한식은 '효(孝)를 강조하는 성리학적 분위기'에서 가족·문중 중심주의에서 시작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 심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함. 현재 한식 의례는 주체가 되는 가족단위와 문중 공동체의 강한 결집력과 정체성 형성의 구심점이 되고 있음.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한식'은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시 '한식'으로 검토하였고, 한식이 역사 문헌에서 확인 되는 명칭 및 현 전승 상황을 고려하여 '한식'을 종목 명칭으로 제안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마. 심의할 내용: '한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바. 의결사항

○ 가결(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있음
- 종목 명칭은 '한식'으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안건번호 지식 2023-04-003

3. ‘단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단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단오’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3.3월~7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 ‘명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3.3.3.~7.30.)
○ 2023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 검토(‘23.9.7.)
○ ‘단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및 의견 수렴(‘23.9.18.~10.17.)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3월~7월
○ 조사기관: ㈔한국민속학회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단오’를 지정함.
- 단오(端午)는 우리 대표 명절로 음력 5월 5일로 여름철을 대표하는 명절임.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로 관련 세시놀이 및 문화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단절 없이 전승된 한국의 대표적 세시명절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단오는 우리나라 명절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된 문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단오는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우리 민족의 전통의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세시명절로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단오 관련 음식·놀이·연희·속신 등은 마을 공동체적 특수성을 보여주며, 지역별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어 온 단오의 여러 문화적 측면은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냄.

○ 특히, 우리의 단오는 '강릉단오제'와 같이 마을·가족 단위 공동체문화가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고, 조상제례가 중심이 되는 단오차례 또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약(藥) 성분이 있는 식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민속이 전개되고 있음. 쑥과 창포는 액막이 전통과 함께 건강·미용 목적의 단오 약초문화가 보다 활발히 전승되고 있음.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로 그네뛰기와 씨름이 있음.

○ 예로부터 단오는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름철 대표 세시풍속임. 모내기가 끝나는 시점의 단오는 쑥과 창포 등으로 대표되는 약초 문화 및 단오제로 대표되는 공동체 문화는 한·중·일 단오 중에서도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단오'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시 '단오'로 검토하였고, 단오가 역사 문헌에서 확인 되는 명칭 및 현 전승 상황을 고려하여 '단오'로 종목 명칭을 제안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오'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마. 심의할 내용: '단오'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바. 의결사항

○ 가결(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있음
- 종목 명칭은 ‘단오’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안건번호 지식 2023-04-004

4.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추석’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추석’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1.8월～12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1.1.26.)

○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1.8.27.～12.10.)

○ 2022년 무형문화재 전통지식분과 제2차 회의 검토(‘22.7.7.)

- 보류: 다른 세시풍속 또는 명절과의 우선순위 및 가치를 확인 후 재검토함

○ 2023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 검토(‘23.9.7.)

○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의견 수렴(‘23.9.18.～10.17.)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1.8월～12월

○ 조사기관: ㈜컬쳐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추석’을 지정함.

- 추석은 반복되는 자연의 법칙성과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달의 상징을 취하는 보름 명절로서, 조상숭배와 추석 세시놀이·음식문화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단절 없이 전승된 한국의 대표적 세시명절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추석은 설과 함께 중요한 우리나라 명절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석과 관련된 문화는 우리 민족의 가족공동체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추석은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전통의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세시명절로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추석과 관련된 음식·놀이·연희·속신 등은 마을 공동체적 특수성을 보여주며, 지역별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어 온 추석의 여러 문화적 측면은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냄.

○ 특히, 추석의 대표의례인 '차례'와 '성묘'는 혈연 간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자 제의를 통해 조상의 은덕과 은혜에 보답하는 계기가 됨. 산업사회가 가족의 분산을 초래하였으나, '귀성(歸省)'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지 등 가족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하는 등 추석은 분산된 혈연이 집합하는 계기가 되고, 혈연간 협동과 화목을 다지는 핵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음. 이처럼 추석은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예로부터 추석은 한 해 농사가 잘되게 해준 것에 감사하는 농공감사일(農功感謝日)로, 곧 농사의 결실을 보게 되는 절일(節日)이자 아울러 한 해 농사를 마무하고 이듬해 풍농을 기리는 뜻깊은 명절로 '효(孝)'에 기반한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추석'은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1.1.26.) 시 '추석'으로 검토하였고, 추석이 역사 문헌에서 확인 되는 명칭 및 현 전승 상황을 고려하여 '추석'을 종목 명칭으로 제안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석’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마. 심의할 내용: ‘추석’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바. 의결사항

○ 가결(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있음
- 종목 명칭은 ‘추석’으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안건번호 지식 2023-04-005

5.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가. 제안사항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조사 계획에 따라 ‘동지’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3.3월~7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하여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 ‘명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3.3.3.~7.30.)
○ 2023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지식분과 제3차 회의 검토(‘23.9.7.)
○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및 의견 수렴(‘23.9.18.~10.17.)
- 이의제기 등 특이사항 없음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3월~7월
○ 조사기관: ㈔한국민속학회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조사의 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

○ 가족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통생활관습이자 전통지식으로서의 ‘동지’를 지정함.

- 동지는 우리 대표 명절로 24절기의 22번째 절기로 1년 가운데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로 겨울의 대표 명절임. 섣달은 1년의 일로 마무리 짓고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로 벽사의례가 전승을 지속·유지하고 있는 대표적 명절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동지는 우리나라 명절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된 문화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문화 등 한국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동지는 역사 문헌에서 그 기록이 풍부하고, 현재까지 단절 없이 그 전통을 지속·유지하고 있음. 우리 민족의 전통적 시간 인식이 드러나는 세시명절로서 뚜렷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동지 팥죽의 벽사의례적 측면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냄.

○ 특히, 팥죽의 새알심과 관련된 민속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시간인식을 선명하게 드러냄. 동지는 24절기의 기준점으로 절기 순환의 시작 기점이라는 점에서 '아세(亞歲, 작은 설)'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음. 새알심을 먹는 행위를 통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동지의 의미를 강화시킴. 이처럼 동지는 오랜 기간 한민족이 정체성을 확인·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예로부터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연종(年終) 구간의 풍속'이 행해짐. 과거에는 벽사의례를 통해 제액을 막는 풍속과 묵은 빚 청산 등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송구영신의 전통을 유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화가 전승되고 있음. 동지는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동지'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반도 내 보편적으로 공유·향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3.1.25.) 시 '동지'로 검토하였고, 동지가 역사 문헌에서 확인 되는 명칭 및 현 전승 상황을 고려하여 '동지'로 종목 명칭으로 제안함.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지'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연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 및 방식, 지정 명칭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심의할 내용: ‘동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바. 의결사항

○ 가결(출석 6명, 가결 6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있음
- 종목 명칭은 ‘동지’로 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안건번호 지식 2023-04-006

6.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심의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검토 사 항

안건번호 지식 2023-04-007

7. ‘생전예수재’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